

(3) 팁스R&D 글로벌 트랙

□ 사업개요

- 해외 투자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

□ 지원 내용

< 2025년 팁스R&D 글로벌 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>

사업기간	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	총 연구개발비(A+B)		
		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	기관부담연구개발비(B)	
			현금	현물
최대 3년	3억원 이상 (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A)의 최소 20% 이상)	최대 12억원	해당금액	해당금액
		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	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	

※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
(단, 운영사의 지분율은 30% 이하로,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)

- (자금 지원)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3억원 이상*에 정부가 3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12억원을 매칭 지원

* 팁스R&D 글로벌 트랙의 경우,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(고유형·펀드형 모두 100% 기준 적용)

- (기타 지원) 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
-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*에 입주하여 보육,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
*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(운영사 컨소시엄)이 보유한 보육 공간

□ 지원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,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* '업력'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을 기준으로 함

**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[붙임2] 참고

※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'창업기업 확인서' 요청 시 제출 필요

팁스R&D 글로벌 트랙 필수요건

◇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* 후 추천된 창업기업(2인 이상 구성 필요)

*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

◇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% 이상* 보유, 운영사 지분율은 30% 이하로 유지**

* 창업기업 지분 60%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

**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

◇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

* 단,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(15억원) 이상인 경우,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(선택요건) 필수요건 충족 and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

① 해외 투자자(VC, 액셀러레이터, 엔젤투자자 등)로부터 10만불 이상 투자유치 받은 창업기업

* 해당 투자금의 규모와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 및 확인서 제출 필요

② 창업기업의 전년도 해외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

③ 해외에 본사 또는 지사의 법인을 1년이상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

※ 단, 글로벌 팁스 R&D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법인이어야 함

④ 해외 파트너사*와 MOA**를 체결한 창업기업

* 파트너사는 반드시 해외 소재 법인이어야 하며,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문서 제출 필요

** MOA는 협력 의향을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서인 MOU와 달리 특정한 조건과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

⑤ 해외 VC 및 글로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졸업(수료) 기업

* 수료 여부가 명시된 공식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 제출 필요

※ 선택요건 관련하여 정량기준에 근접한 수준일 경우, 글로벌 역량 및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
□ 지원 제외사항

- ① 팁스R&D*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(재참여 불가)
 - * 일반트랙, 딥테크 트랙, 글로벌 트랙, 스케일업 팁스
- ② 일반트랙, 딥테크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, 글로벌 트랙 지원 불가
- 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[붙임2] 참조)
-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중인 경우
-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- 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
- 1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
- 2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75만불 이상인 경우
- 3)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.5배 이상인 경우

※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3] 및 「팁스 총괄 운영지침」 참조

□ 선정 절차

-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2025년 팁스R&D 글로벌 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업무지원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전문기관으로 신청

① 신청.접수 (창업기업 → 팁스 운영사)

- (신청 기간) 상시 접수 (별도 접수기간 없음)
- (신청 방법)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, 투자심사역 면담,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([붙임1] 참조)
- (신청 양식)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

※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(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)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,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

②~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(팁스 운영사 → 업무지원기관)

-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(확약)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(운영사별 연간 추천 T/O범위 내)
- *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(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>

- 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
 - 이용매뉴얼 : '알림·고객' → '자료실' → 'IRIS 사용 매뉴얼' 참조
- ◇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: www.k-startup.go.kr
 -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'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'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

④ 사전검토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(지분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차별성 등), 지원요건 및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

⑤ 선정평가 (전문기관)

-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, 글로벌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운영사·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= 선정평가(100%) + 가점(최대 3점)

< 가점사항 >

- ① 창업기업의 본사(본점) 또는 공장*이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(확약서 제출) (2점)
*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
- ②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(1점)
- ③ 프리팁스(Pre-TIPS) '성공' 기업 (2점)
- ④ 글로벌 특허 등록 기업 (2점)

⑥~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(중소벤처기업부/전문기관)

-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,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, 지원 금액을 결정
- 창업기업-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최대 12억원)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

⑧ 사업수행 (팁스 운영사/창업기업)

-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·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
-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-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, 전문/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(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)를 통해 "우수", "보통", "미흡", "극히불량*" 여부 판정

* '극히불량'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

** "우수" 또는 "보통" 과제의 경우, 향후 '포스트팁스'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

※ 글로벌 트랙 사업화 성공 요건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